

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
번호

2499

아이수루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☐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·부상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(국립생태원, 2018년)할 만큼 피해가 큰 실정입니다.
- ☐ 특히,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만마리,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됩니다.
- ☐ 특히, 올해 초부터 서울시에서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‘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바, 이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,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- 이를 위해, 본 조례안 제1조의 경우,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과 관련한 정의 조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안 제2조의 경우,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, 프리트 패턴(frit pattern), 데칼 및 유리블록을 추가하여 충돌 방지에 있어 활용하는 용어의 이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용어의 추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의 경우,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추가 규정한 인공구조물의 부착 및 설치,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충돌 저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, 안 제6조의 경우,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,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주 또는 소유주, 관리자 등에게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, 권고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